

영등포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4. 2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28호로 2016년 4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찾아가는 복지의 전환체계 마련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2016.7.1. 전 등에 확대 시행하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분야 인력 확충을 위하여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302’를 ‘1,378’로 개정(증 7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275’를 ‘1,351’로 개정(증 76명)

### 나.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

- 총계 ‘1,302’를 ‘1,378’로 개정(증 76명)
  - 일반직 총계 ‘1,297’를 ‘1,373’로 개정(증 76명)
  - 일반직 6급 이하 ‘1,225’를 ‘1,301’로 개정(증 76명)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6조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됨.

##### 1) 소요예산액

(단위 : 천원)

합 계	시 비	구 비	비 고
1,551,375	1,163,531	387,844	시비:구비 = 75:25

##### 2)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1,551,375	
기본금(보급)	736,268	1,418,300원×1.03×84명×6월 =736,268천원
직급보조비	52,920	105,000원×84명×6월=52,920천원
국민건강보험금	41,000	- 건강보험료 38,479천원 - 장기요양보험료 2,521천원
연금부담금등	203,811	- 연금부담금 151,836천원 - 퇴직수당부담금 50,288천원 - 재해보상부담금 1,687천원
수 당	517,376	- 육아휴직수당 13,760천원 - 가족수당 28,125천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11,693천원 - 동근무수당 35,280천원 - 사회복지업무수당 50,40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221,382천원 - 정액급식비 65,520천원 - 명절휴가비 73,627천원 - 연가보상비 17,589천원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소외된 빈곤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인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2016. 7.1.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충원되는 사회복지 인력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 총수는 1,302명에서 1,378명으로 76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는 각 동에 배치할 사회복지직 공무원 84명을 신규 채용하고 자연 감소되는 관리운영직 공무원 8명을 감원하였기 때문임.
- 동주민센터 조직 체계의 기본모형은 현행 행정팀은 그대로 두고 복지팀을 2개팀(복지1팀·복지2팀)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현재 영등포본동을 비롯한 5개동은 2015년도부터 복지 1,2팀을 운영하고 있고, 2016.7.1. 2단계로 당산1동을 비롯한 11개동이 복지1,2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여의동과 신길7동은 복지팀 추가 신설 없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증원하려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임.(※현재 동별 사회복지인력 현황 참조)

### 〈동주민센터 복지2개팀 운영현황〉

구 분	계	동 주민 센터 명
1단계 (2015년)	5개동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신길1동, 신길5동, 대림3동
2단계 (2016.7.1)	11개동	당산1·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2동, 신길3·4·6동, 대림1·2동
팀신설 없음	2개동	여의동, 신길7동

- 이와 같이 동주민센터 조직개편에 따라 신규로 채용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84명은 대부분 각 동별로(4~5명) 배치되어 소외계층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그 동안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영역이 확대되고 복지예산 및 복지업무는 급증 하였으나,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 인력은 많이 부족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은둔하고 있는 빈곤위기 가정까지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소외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영등포구에 제시한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액은 총 1,167억 원이고, 영등포구 인건비 편성액은 총 1,078억 원(기준인건비의 92.4%수준)이며, 개정안에 따른 사회복지직 84명에 대한 인건비 15억 원 (시비 75%: 구비 25%)은 2016년 세입·세출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따라서 인력조정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준인건비 내에서 재정적인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인건비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 참조)

【 불 임 】

## 2016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

□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 116,720,347천원

□ 영등포구 예산편성금액 : 107,858,972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총 계	107,858,972
101 인건비	87,348,672
101-01 보수	70,441,256
101-02 기타직보수	4,846,508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060,908
204 직무수행경비	2,383,614
204-02 직급보조비	2,383,614
303 포상금	4,200,276
303-02 성과상여금	4,200,276
304 연금부담금등	13,926,410
304-01 연금부담금	11,517,288
304-02 국민건강보험금	2,409,122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